##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,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## 2024. 4. 1.

## 강 서 구 청 장

1. 제 목: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: 2024. 4. 1. ~ 2024. 4. 15.(14일간)

3. 법적근거: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1별표 21

4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

5. 공시송달 대상

사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내용	공시송달사유
개미인력 강서점	송*문	강서구 가로공원로 181, 402호	변경 신고 위반 (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)	정지 1개월 (1차 처분)	우편물 반송 (폐문 부재)
(사)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	김*현	강서구 마곡중앙2로 15, 703호	변경 신고 위반 (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)	정지 6개월 (2차 처분)	우편물 반송 (폐문 부재)

## 6. 공고내용

가. 처분내용: 개미인력 강서점 1차 처분(정지 1개월)

(사)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2차 처분(정지 6개월)

나. 위반내용: 개미인력 강서점 종사자 변경 신고 의무 위반

(사)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위치 변경 신고 의무 위반

다. 행정처분: 개미인력 정지 기간(2024. 4. 29. ~ 2024. 5. 28.)

(사)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정지 기간(2024. 4. 29. ~ 2024. 10. 25.)

7. 문의사항: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(☎02-2600-6398)로 문의

- 8. 기타사항: 영업정지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등록취소 되며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적발 시 2차 처분(종사자 변경 위반: 정지 2개월), 3차 처분(위치 변경 위반: 정지 6개월)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인 강서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서울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.
- 9. 청구기간: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청구(행정심판법 제27조)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 제기(행정소송법 제20조)